제**283회 임시회** 2009. 9. 21(월)

심사보고서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충 청 북 도 의 회 행정소방위원회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 9. 21. 행정소방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9월 3일 충청북도지사

2. 회 부 일 자 : 2009년 9월 4일

3.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2009. 9. 15.)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수정가결)

Ⅱ.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정책기획관 강호동)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지방자치 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통합관 리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한편,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를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 조항 변경

- ▶ 지방자치법 제133조 ⇒ 지방자치법 제142조(안 제1조)
- 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 ▶ 2019년 12월 31일까지(안 제18조)

Ⅲ. 검토보고 요지

(행정소방수석전문위원 양권석)

가. 개정개요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09.4)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 조항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존 속기한을 설정하는 한편,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도 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개정('09.4)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 조항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설정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여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르면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바,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조례공포 후 10년 3개월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존속기한 조항인 제18조 중 "2019년 12월 31일까지"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수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은 2005년 12월 28일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9월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 V. 토론 요지: "생 략 "
- Ⅵ. 수정안 요지
 -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9. 9. 15(제283회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 행정소방위원장
 - 2. 수정이유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조례공포 후 10년 3개월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2019년 12월 31일까지"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하고, 명확한 용어의 표현을 위한 일부조항의 자구 수정

- 3. 수정주요내용
 - 가. 기금의 존속기한 변경(안 제18조)
 - 나. 명확한 용어의 표현을 위한 자구수정(안 제10조제2항)
- Ⅶ. 심사 결과 : 수정가결
-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IX.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안 등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009. 9. 15. 행정소방위원회

1. 수정이유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조례공포 후 10년 3개월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2019년 12월 31일까지"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하고, 명확한 용어의 표현을 위한 일부조항의 자구 수정

2. 주요내용

- 가. 제10조 "통합기금관리관이 하며,"를 "통합기금관리관이 되며,"로 자구수정
- 나. 제18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로 한다."로 수정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제2항 중 "통합기금관리관이 하며,"를 "통합기금관리관이 되며,"로 한다.

안 제18조 중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통합기금관리관이 하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통합기금관리관이 되 며,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며,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한다. ③ ~ ④ (생략) ③ ~ ④ (원안과 같음) 제18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 제18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 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호 413

제출연월일: 2009년 9월 3일 제 출 자: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법령에 맞게 정비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 조항 변경 : 지방자치법 제133조 ⇒ 지방자치법 제142조(안 제1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 2019.12.31까지(안 제18조)
- 3. 의안전문 : 붙 임
-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 임
- 5. 관련법령 발췌 : 붙 임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 또는"을 "「지방자치법」 제142조 나"로,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를 "충청 북도통합관리기금"으로 한다.
- 제2조제1호 중 ""통합기금"이라 함은"을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여유자금"이라 함은"을 ""여유자금"이란"으로 하고,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금고"라 함은"을 ""도금고" 란"으로, "도"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금운용관"이라 함은"을 ""기금운용관"이란"으로 한다.
- 제4조 본문 중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 도지사"를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 제6조제2호 중 "분임통합기금운용관"을 "통합기금운용관"으로 한다.
- 제8조제1항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에 따라"로 한다.
- 제10조제2항 중 "당해 위원회 위원중에서"를 "위원회 위원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중에서"를 "자 중에서"로 한다.
- 제11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위원장이"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8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과 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1항과 제2항, 제13조제1항과 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과 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각각 항과 조문을 띄어쓰기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 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

-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 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